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6-49
--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. 4. 1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에 맞춰 내용 등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 법령에 근거한 내용 정비(안 제2조)
- 나. 위촉직 구성 인원의 성별 비율에 대한 기준 명시(안 제3조)
- 다. 위원의 해촉 사유 구체화(안 제4조의 2)
- 라. 위원회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일부 수정(안 제8조)
- 마.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1조(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)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: 2026. 3. 5.~2026. 3. 25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: 원안 동의
- 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4)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: 개선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**청소년기본법**」 제11조”를 “「**청소년 기본법**」 제11조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 중 “**청소년보호관련**”을 “**청소년보호 관련**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**제도개선**”을 “**제도 개선**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「**청소년보호법**」 제2조”를 “「**청소년 보호법**」 제2조”로, “**청소년유해약물 등 및 청소년유해업소**”를 “**청소년유해약물등,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·학대**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**올린**”을 “**부친**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**1인**”을 “**1명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**부위원장 1명은 복지동행국장**”을 “**부위원장 1명은 교육체육국장**”으로, “**위촉위원**”을 “**위촉직 위원**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,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.

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1.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·민간단체·청소년단체·교사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
2. 학부모, 교육자,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제4조제1항 본문 중 “1회에 한하여”를 “한 차례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
2.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(6개월 이상)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3.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
4.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
5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5조제2항 중 “2명중”을 “2명 중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인정하는 때에”를 “인정할 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

중 “올리는 사항을 회의개최”를 “부치는 사항을 회의 개최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긴급을 요하거”를 “긴급한 경우이거”로, “그러하지 아니하다”를 “그렇지 않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개회하고”를 “개의하고”로 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, 회의 안건,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내용, 심의·의결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의견청취)”를 “(의견 청취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관계공무원, 청소년관계전문”을 “관계 공무원, 청소년 관계 전문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위원회”를 “구청장은 위원회”로, “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”을 “참석한 위원에게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”로, “수당과 여비를”을 “수당 등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출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”를 “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청소년 기본법</u>」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구역 내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,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기능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“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“라 한다)를 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청소년단체, 청소년보호관련 민간단체의 육성·지원</u> 2. <u>청소년 건전육성·보호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</u> 3. (생략) 4. <u>청소년유해환경(「청소년보호법」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, <u>청소년유해약물</u> 등 및 <u>청소년유해업소</u>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으로부터 청소년을</u> 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청소년 기본법</u>」 제11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제2조(기능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---- <u>청소년보호 관련</u> ----- 2. ----- ----- <u>제도 개선</u>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「<u>청소년 보호법</u>」 제2조----- ----- <u>청소년유해약물등,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·학대</u>-----

보호하기 위한 대책

5. (생략)

6.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·보호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올린 사항

② (생략)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 1명은 복지동행국장이 되며, 나머지 1명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, 당연직위원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,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
1. 삭제

2. 청소년단체, 시민단체, 교사단체 및 청소년유해환경 관련 업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

3. 학부모, 교육자,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<신설>

5. (현행과 같음)

6. -----

-- 부친 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조(구성) ① -----
1명-----

--.

② -----
부위원장 1명은 교육체육국장-----
----- 위촉직
위원 -----.

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,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.

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, 금품·향응수수, 성범죄 등 범죄와 연루된 경우와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으며,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<신 설>

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1.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·민간단체·청소년단체·교사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

2. 학부모, 교육자,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-----
----- 한 차례만 -----
-----.

-----.

②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4조의2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

2.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(6개월 이상)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3.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

4.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

5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5조(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등) ① (생략)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2명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순서에 따라 그

제5조(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2명 중 -----

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회의 등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, 정기회의는 상·하반기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회의에 올리는 사항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회의록)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, 출석위원의 직·성명, 회의 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.

제9조(의견청취) 위원장은 위원회

-----.

제6조(위원회의 회의 등) ① ----

인정할 때 -----.

② -----

----- 부치는 사항을 회의
개최 -----
-----.

-- 긴급한 경우이거-----
----- 그렇지 않
다.

③ -----

----- 개회하고--

-----.

제8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, 회의 안건,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내용, 심의·의결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9조(의견 청취) -----

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,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10조(수당 등)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9조에 따라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출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----- 관계 공무원, 청소년 관계 전문-----

제10조(수당 등) ① 구청장은 위원회-----
--- 참석한 위원에게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--- 수당 등을 ---.

② -----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-----

-----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1항에
해당하지 않음.

3. 미첨부 사유

비용추계 대상 아님

4. 작성자 : 교육체육국 교육청소년과 김상은 (☎ 3153-8985)